

의안번호	2211014
의 퇴 인	송재봉 의원
회 답 일	2025.7.1.
추계번호	25E3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과되는 기타소득세의 한도 변경: (현행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 해지로 인해 공제가입자가 받는 환급금 → (개정안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 해지로 인해 공제가입자가 받는 환급금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과되는 기타소득세의 한도 변경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동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소기업·소상공인 인원수 및 이들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도별 납부내역 및 이들의 연도별 실효세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
 -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 해지된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기타소득세 부과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 해지로 인해 공제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인데, 동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 해지로 인해 공제가입자가 받

는 환급금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에 따라 기타소득세 부과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고,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 해지된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해약환급금의 규모는 가입일자 및 부금납부 월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일반해약의 경우 환급금은 부금납부월수가 1회이상 3회 미만인 경우 납부부금의 80%, 4회이상 6회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100% 등으로 정해짐)

□ (참고 현황)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제도는 폐업,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패자부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생애주기 맞춤형 공제제도임

-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5~1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고 별도 의무 납입기간 없이 폐업·노령·사망 등 지급사유 발생 즉시 공제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수령

[표 3] 노란우산공제 운영현황

(단위: 건, 억원, %)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2024	
제적가입자	1,384,038 (13.0)	1,542,268 (11.4)	1,667,113 (8.1)	1,718,901 (3.1)	1,770,988 (3.0)	3.1
제적부금	148,308 (23.4)	180,786 (21.9)	216,908 (20.0)	250,192 (15.3)	285,104 (14.0)	14.6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